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명 지 대 학 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명지대학교 학칙」 제71조에 의거하여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명지대학교 총장

▣ 의 견 제 출 ▣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enaka74@mju.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 전화문의 : 규정담당자(031-330-6014)

의안번호	1
발의부서	교육지원처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나. 연구전략기획팀-779(2026.07.21.) “2026년도 용인교육지원청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결과 보고”
- 다. 2026년 8월 실처장 간담회(2026.08.04.) “시간제 등록생 통합반 교육과정 폐지 논의”

2. 개정사유

- 가. 용인교육지원청과 체결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협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우리 대학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이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33조
 - 나. 시간제등록생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반학생과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을 폐지하고, 계약학과 진학 등을 위한 시간제등록생 별도반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제63조
- ※ 최근 3개년 간 등록인원 1명(무리한 전공과목 개설 요구 등의 피해 발생)

시간제등록생[통합반 및 별도반] 등록 인원(3개년)								
구분		2023-1학기	2023-2학기	2024-1학기	2024-2학기	2025-1학기	2025-2학기	2026-1학기
통합반		1명	-	-	-	-	-	1명
별도반	미래융합대학	104명	91명	80명	68명	85명	81명	111명
	미래교육원	49명	62명	36명	37명	37명	58명	37명
합계		154명	153명	116명	105명	122명	139명	149명

3.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33조(학점의 인정) ① ~ ③(생 략) <u><신 설></u> ④국내·외 다른 대학(원), 부속·부설교육기관과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학칙시행규칙(대학원), 학칙시행규칙(전문대학원) 및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에 의한다.	제33조(학점의 인정) ① ~ ③(현행과 같음) <u>④고등학교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⑤..... ⑥..... 	항신설 항번호변경 항번호변경
제63조(시간제등록생)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① ~ ③(생 략) ④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u>일반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u> 대상으로 하는 별도 반으로 운영한다. ⑤ ~ ⑦(생 략)	제63조(시간제등록생)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① ~ ③(현행과 같음) ④.....<u>시간제 등록생만을</u>..... ⑤ ~ ⑦(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3조는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내용변경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 2.(생 략)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 6.(생 략)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2
발의부서	대학원교학처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관련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 나. 2026학년도 제7차 대학원위원회(2026.08.05.) 회의 결과

2. 개정사유

- 가.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 2년 적용 대상을 현행 「외국인 대상 특정 학과 또는 전공」에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 학과 또는 전공」으로 변경하여, 내·외국인 학생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수업연한 단축을 적용하도록 한 현행 학칙의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기간을 「고등교육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맞게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대상 전용학과의 1년제 운영 근거를 유지하고, 수업연한 단축 대상을 외국인 대상 특정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정된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 연구처 신설에 따라 대학원과 연구처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처장을 대학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 마. 2026학년도 후기 신설 예정인 계약학과(K-POP음악교육학과, 식품융합경영학과)의 신입생 모집 저조로 학과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학과를 폐지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여 학과 및 정원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1조(수업연한) ①(생 략) ②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③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2년6개월로 한다. 다만, <u>외국인 대상 특정학과 또는 전공</u>의 경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u>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u>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1년 2. 각 대학원 석사과정: <u>6개월</u> 3. 각 대학원 박사과정: 6개월 4. 각 대학원 통합과정: 1년 <u>5. 각 대학원 외국인 대상 특정학과 또는 전공: 1년</u> ⑤(생 략)	제11조(수업연한) ①(현행과 같음) ②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③.....<u>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 학과 또는 전공</u>..... ④.....<u>불구하고, 각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u>..... 1. 학사과정 : 1년 2.....<u>1년</u> 3. 각 대학원 박사과정 : 6개월 4. 각 대학원 통합과정 : 1년 <u><삭 제></u> ⑤(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호삭제
제66조(대학원위원회) ①(생 략) ②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과대학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기획조정실장, <u>교육지원처장, 대학원 교학처장</u>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 ④(생 략)	제66조(대학원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u>교육지원처장, 연구처장, 대학원 교학처장</u>..... ③ ~ ④(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변경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현행]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

과정	소속	학과명칭	수여학위명	운영형태	설치연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u>석사</u>	<u>대학원</u>	<u>K-POP음악교육학과</u>	<u>K-POP음악교육학석사</u>	<u>재교육형</u>	<u>2026</u>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u>석사</u>	<u>대학원</u>	<u>식품융합경영학과</u>	<u>식품융합경영학석사</u>	<u>재교육형</u>	<u>2026</u>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개정(안)]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

과정	소속	학과명칭	수여학위명	운영형태	설치연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3
발의부서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관련근거: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계약학과 회의(2026.07.23.) 회의 결과

2. 개정사유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의 핵심 요소로 확대되고 우리 대학 석·박사 과정의 학과명이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에서 “AI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학사과정의 학과명도 동일하게 변경하여 학위과정 간 연계성 및 학과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 특화 AI계약학과」 사업 참여에도 대비하고자 함

3. 신·구 조문 대비표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9)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27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시스템공과대학 AI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현행]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

과정	소속	학과명칭	수여학위명	운영형태	설치연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학사	스마트시스템 공과대학	<u>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u>	공학사	재교육형	2026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개정(안)]

(별표9) 계약학과의 명칭 및 수여학위명

과정	소속	학과명칭	수여학위명	운영형태	설치연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학사	스마트시스템 공과대학	<u>AI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u>	공학사	재교육형	202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